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94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이병진·송옥주·권칠승

이상식 · 김한규 · 복기왕

홍기원 · 민병덕 · 김영배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를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로 한다.

6의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
	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
	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②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2,
<u>제6호의3의</u> 정보에 대하여는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 · 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